

차량별 AI 표준행동요령

농림축산식품부 차량별 AI 표준행동요령

[공통] 차량 세척 · 소독 요령

- 1)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(특히, 흙받이 · 차량바퀴 등) 세척 실시
- 2)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 할 것

*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 · 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을 반드시 차량 소유주가 수거하여 처리



- 3)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



차량 내부 소독

4)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출입자 소독기에서 소독



분무 소독



대인소독기 소독

[공통] 운반차량 소독 미실시 차량 처벌 규정

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, 300만 원 이하 과태료

운행 전 확인 사항

1) [공통] 차량무선인식장치(GPS) 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



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처벌규정

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 · 제거한 차량 운전자
(소유주)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2) [공통] 차량 내 방역물품 점검

-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진 상태, 비닐장화, 방역복, 마스크, 장갑 등

- 3) [공통]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대해 방문 날짜, 시간 등 통보
- 4) [알 운반차량] 일회용 난좌 사용을 권장, 그러지 못할 경우 깨끗이 세척·소독한 난좌 사용
- 5) [알 운반차량] 1일 1회 이상 차량 내부의 알 운반 기구를 세척 → 소독 → 건조 실시

농장으로 출발

- 1) [공통] 공장 소독시설 소독 후, 비치되어 있는 '소독실시대장'에 기록 (1차 소독)
- 2) [공통] '거점소독장소'에서 차량 내·외부를 소독하고 '소독필증' 발급 (2차 소독)

농장 도착

- 1) [공통] 농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문 시 방문지 관리인(농장주 등)의 허락 후 출입
- 2) [공통] 농장 내에서 가급적 농장종사자와 접촉하지 않음
- 3) [공통] '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'를 통해 소독 실시 (3차 소독)
- 4) [공통]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전용 의복(방역복)과 신발을 착용한 후 차량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(소독약)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
- 5) [공통]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 (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)
- 6) [공통] 농장 방문 시 농장에서 질병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

AI 의심가축 발견 시 신고처

관할지자체(☎ 1588-4060) 및 농림축산검역본부(☎ 1588-9060)

농장 출문

- 1) [공통] 농장 출문 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1회용 방역물품은 비닐 용기에 밀봉 처리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
- 2) [사료차량, 왕겨차량] 개인용 소독기로 손, 의복, 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 외부는 농장에 설치된 소독장비를 통해 소독 실시
[분뇨차량] 차량 운행 중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
[알 운반차량]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차량외부 소독, 차량내부는 개인용 소독기 사용

[어리장차량] 차량의 적재함에서 깃털, 분변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

* 생축운반 시 분변 등의 낙하 방지를 위해 가림시설 설치

왕겨공급 · 관리요령

- 왕겨포대 재활용 금지
- 왕겨저장고는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
- 왕겨 생산업체 운영자는 1회 운영 후 세차 및 소독, 소독실시기록부 기재

어리장차량 세척 · 소독 요령

-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(특히, 출발이 · 차량바퀴 등)의 유기물을 제거 후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
 - * 세척 · 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유기물을 차량 소유주가 수거하여 처리
-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은 간이소독기 등 사용하여 소독 실시
- 어리장 세척 · 소독 요령 설명
-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출입자 소독기에서 소독

